

국민 불편과 심각한 사회적 혼란 및 갈등 발생

1 수신료 납부자의 불편 초래

- 현재 수신료는 전기 고객번호에 TV 수상기가 등록되어 세대별 전기검침 이후 전기요금을 청구할 때 수신료가 함께 청구되는 방식으로 수납하고 있습니다.
- 현재와 같이 전기료와 통합하여 간편하게 수신료를 납부할 수 있는 상황에서 수신료 결합 고지를 금지하게 되면, 납부 거부권이 인정되지 않는 시청자로서는 별도로 이를 납부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초래됩니다.

□ 수신료 납부 공정성과 형평성 붕괴

- TV수신료 납부 의무는 국회에서 방송법이라는 ‘법률’을 통해 규정한 법적 의무이며, 헌법재판소에서도 특별부담금으로 판단하여 납부 거부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납세의 의무를 지는 것처럼 TV를 소지한 자는 방송법에 의거하여 누구나 수신료 납부 의무를 집니다.
- 즉, 지금처럼 한전 전기요금 고지서에 TV수신료를 병기하여 고지하던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TV수신료를 분리하여 고지하던 고지방식과 관계 없이 법에 따라 TV수상기 소지자인 국민의 수신료 납부 의무는 존속합니다.
- 그럼에도 TV수신료를 한전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분리하면 사실상 국민의 수신료 납부 회피가 조장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수신료 체납자가 양산될 것입니다. 이는 수신료 납부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무너뜨리고 사회적 불공정과 징수 정의의 붕괴를 야기할 것입니다.

□ 광범위한 위법 및 징송 상황 초래

- 수상기 소지자가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공사는 방송법 제66조 제3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강제징수 절차에 돌입할 수 있습니다.

〈 방송법 제66조 (수신료 등의 징수) 〉

- ① 공사는 제65조에 따라 수신료를 징수하는 경우 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기간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수신료의 100분의 5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한다.
- ② 공사는 제64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 수상기의 소지자에 대하여 1년분의 수신료에 해당하는 추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 ③ 공사는 제65조의 수신료와 제1항 및 제2항의 가산금 또는 추징금을 징수할 때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 국세징수법 제24조 (강제징수) 〉

관할 세무서장(체납기간 및 체납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자의 경우에는 지방 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은 납세자가 제10조에 따른 독촉 또는 제9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 전 징수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 또는 체납액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재산의 압류(교부청구·참가압류를 포함한다), 압류재산의 매각·추심 및 청산의 절차에 따라 강제징수를 한다.

- 만약 전 국민적으로 광범위한 수신료 납부 회피 상황이 발생하면,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수신료를 강제징수하기 위한 다수의 소송이 불가피하며, 이에 따른 대규모의 징송 상황이 우려됩니다.

〈참고〉 수신료 체납 관련 해외 공영방송사 규정

방송사	규 정
영국 BB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미납 시 수신료 납부 권고 ■ 미납 재발 시 최고 1,000파운드(약 164만 원)의 벌금형 가능 ■ 매주 약 1,700명이 수신료 미납으로 유죄 판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9년 수신료 회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약 114,000건
독일 ARD/ZDF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개월 이상 미납 시 질서위반죄 적용 ■ 최대 1,000유로(약 140만 원) 벌금
일본 NHK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V 수신 계약상 부정 또는 납부면제사유 소멸 미신고 시 2배 할증 부과 ■ 6개월 이상 연체 시 1기(2개월)당 2% 연체이자 부과 ■ 2006년부터 민사절차 통한 납부 독촉과 소송 가능 ■ 2009년부터 강제집행 가능
포르투갈 RTP (전기요금과 통합징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단계 : 전력회사에서 해당세대에 전기 공급 중단 ■ 2단계 : RTP가 미납 내역을 세무당국에 전달하여 추적, 징수하도록 요구 (미납자 정보는 전력회사에서 RTP로 통보) ■ 3단계 : 세무당국에서 미납 수신료 징수. 징수한 수신료는 RTP 재정에 귀속하도록 회계 조치

2 국회의 방송법 입법 취지와 사법적 판단에 배치

- 수신료는 납부 선택권이 전제된 제도가 아닙니다. 나라마다 징수방식의 차이는 있어도, '내고 싶은 사람만 내는' 수신료 제도는 없습니다. 우리 방송법은 수상기를 소지하면 수신료를 납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방송법 제64조 〉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텔레비전방송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헌법재판소에서도 수신료는 방송 시청 여부와 관계없이 부과되는 '특별 부담금'으로 규정하면서, 공영방송이 국가나 정치적 영향력 등에서 자유롭기 위해 적절한 재정적 토대를 확립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헌법재판소 1999.5.27. 선고 "98헌바70" 〉

- '공사의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는 자'가 아니라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수상기를 소지한 자'가 부과대상이므로 실제 방송시청 여부와 관계없이 부과된다는 점, 그 금액이 공사의 텔레비전방송의 수신정도와 관계없이 정액으로 정해져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를 공사의 서비스에 대한 대가나 수익자부담금으로 보기도 어렵다.
- 따라서 수신료는 공영방송사업이라는 특정한 공익사업의 경비조달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상기를 소지한 특정집단에 대하여 부과되는 특별부담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공사가 그 방송프로그램에 관한 자유를 누리고 국가나 정치적 영향력, 특정 사회세력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하여는 적절한 재정적 토대를 확립하지 아니하면 아니되는 것이다.
- 수신료 수입이 끊어진다면 공사의 방송 사업은 당장 존폐의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고, 그러한 사태는 우리 사회에 적지않은 파장을 미치게 됨은 물론 방송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도 사실상 심각한 훼손을 입게 될 것이다.

○ 이 같은 토대 위에서 사법부와 헌법재판소는 위탁징수와 결합고지의 정당성을 인정해 오고 있습니다.

- 법원은 징수위탁을 규정한 방송법 제67조 제2항은 수탁자인 한전이 재량에 의하여 수신료를 징수하는 방법까지 함께 위임한 취지로 볼 수 있고, 따라서 결합고지를 규정한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은 당연한 사항을 규정했다고 판시합니다.
- 헌법재판소도 한전이 자신의 고유 업무와 결합하여 징수 업무를 할 수 있는지는 징수업무 처리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결정했습니다.

< 서울행정법원 2006.9.5. 선고 “2005구합27390” 판결문 중

2심 서울고등법원 2006누2377 (2007.6.1.)

3심 대법원 원심 확정 2007두12989 (2007.9.7.) >

- 방송법 제67조 제2항은 지정을 받은 수탁자의 수신료 징수권한뿐만 아니라 수탁자가 자신의 재량에 의하여 수신료를 징수하는 방법까지 함께 위임한 취지로 못 볼 바 아니어서
- 수탁자가 수신료를 징수할 권한을 적법하게 위탁받은 이상... 비용 절감과 업무처리의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하여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행할 것인지 아니면 이를 분리하여 행할 것인지는 수탁자의 재량에 의하여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은 당연한 사항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여 모법의 위임 없이 시행령에서 이를 규정하였다고 하여 그 자체로 바로 모법 위반이라고는 할 수 없다.

< 헌법재판소 2008.2.28. 선고 “2006헌바70” >

- 징수업무를 한국방송공사가 직접 수행할 것인지 제3자에게 위탁할 것인지, 위탁한다면 누구에게 위탁하도록 할 것인지, 위탁받은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와 결합하여 징수업무를 할 수 있는지는 징수업무 처리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결정할 수 있는 사항

- 나아가, 방송 내용에 대한 불만과 무관하게 수신료가 특별부담금에 해당하는 이상 분리고지 방식을 통한 납부 거부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 판결의 취지입니다.

**< 서울행정법원 2015.10.30. 선고 “2015구합6545” 판결문 중
2심 서울고등법원 2015누66273 (2016.6.15.)
3심 대법원 원심 확정 2016두44100 (2016.10.13.) >**

- 수신료가 특별부담금에 해당하는 이상 우리 법은 수신료 납부의무자들에게 수신료 납부 여부에 대한 선택을 통해 피고 한국방송공사의 방송의 질을 평가하는 모습을 예정하고 있지 않다고 봄이 상당하다.
- 오히려 국민이 피고 한국방송공사의 방송이 정치적으로 편향된다고 느끼는 등의 불만이 있다면 헌법상 보장된 정치적 표현의 자유, 선거권 등을 행사함으로써 이를 해결할 수 있고, 현재 대한민국이 그와 같은 적법한 기본권 행사를 통해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킬 수단과 방법이 봉쇄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그렇다면 우리 법상 개별 시청자들에게 수신료의 납부를 저항함으로써 피고 한국방송공사의 정치적 편향성을 극복할 권리가 보장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 IPTV, OTT 등 유료 방송 플랫폼을 통해 TV를 보는 국민들에게 수신료는 이중부담이라는 주장이 있지만, 헌법재판소는 유료방송 요금과 수신료는 성격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중부담이라고 할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방통위도 홈페이지에 같은 내용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 헌법재판소 2008.2.28. 선고 “2006헌바70” >

- 케이블 텔레비전 시청료는 케이블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대가로 케이블 텔레비전 방송국에 지불하는 요금일 뿐 공영방송사업이라는 특정한 공익사업의 경비 조달에 총당하기 위한 특별부담금으로서의 수신료와 성격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케이블 텔레비전 시청자가 수신료 납부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여 이를 이중 부담이라 할 수 없음

< 방송통신위원회 민원/정책 Q&A (2023.3.22.) >

- TV수신료는 텔레비전을 보유하고 있다면 누구나 납부해야 하며, 케이블 방송 요금은 필요에 의해 계약을 하고 요금을 납부하는 부분입니다.

3

최소 수신료로 최대의 공적 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한 통합징수 제도

- 통합징수 제도의 효율성은 수치로 입증됩니다. 수신료 납부율은 한전 위탁징수 이전 52.6%에서 현재 100%에 이르고, 35.5%에 달하던 징수비용률은 약 10%로 낮아졌습니다.
- 이는 가구의 절반만 수신료를 내고, 그 돈의 1/3 넘게 징수비용으로 소모하던 상황이 크게 개선된 것입니다. 지난해 총 징수비용 660억 원은 위탁징수 전인 1993년 717억 원보다 낮은 상황입니다.

〈한전 위탁징수의 효율성〉

구분	위탁징수 이전 (1993년)	위탁징수 직후 (1995년)	최근 (2022년)	증감 (1993년 대비)
수신료 수입	2,022억 원	3,685억 원	6,934억 원	+4,912억 원
수상기 등록대수 (가정용 등록률)	1,043만 대 (79.8%)	1,452만 대 (95.2%)	2,299만 대 (97.0%)	+1,256만 대 (+17.2%p)
납부율	52.6%	95.5%	100%	+47.5%p
총 징수비용 (위탁징수비용)	717억 원 (436억 원)	399억 원 (190억 원)	660억 원 (467억 원)	-57억 원
총 징수비용률 (위탁징수비용률)	35.5% (24.1%)	10.8% (5.2%)	9.52% (6.73%)	-26.0%p

- 이처럼 효율적인 징수방식이 있었기에 KBS는 1981년 이후 43년간 수신료가 동결됐음에도, 월 2,500원이라는 최소 수준의 수신료(일본의 1/5, 독일의 1/10 수준) 금액으로 공영방송의 책무를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해외 수신료 제도 비교〉

구분	한국	일본	영국	독일
납부대상	수상기 소지자	수신장치 소지자	수신장치 소지자	모든 세대
연간 납부금액		14,700엔	159파운드	220.2유로
	30,000원	141,590원 (4.7배)	242,930원 (8.1배)	295,130원 (9.8배)
연간수입	-	6,801억(엔)	38억(파운드)	80억6,182만 (유로)
	6,934억 원	6조 5,507억 원	5조 8,064억 원	10조 7,995억 원
징수비용	-	622억(엔)	1억2,220만 (파운드)	1억9,980만 (유로)
	660억 원	5,991억 원	1,867억 원	2,676억 원

※ 출처 : KBS 수신료 수입(2022), NHK 연감(2022), BBC 차보고서(2021/2022), KEF 23.Bericht(2022)

※ 환율 : 2022.12.30. 매매기준율(하나은행) 적용

□ 한전 위탁계약 기간

- 현행 한전 위탁계약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체결되어 있습니다. 공사와 한전은 3년을 주기로 계약 기간 만료 시점에 계약을 갱신해 왔습니다. 계약 기간은 특별한 사유나 이의가 없는 경우 자동 연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한국전력 위수탁 계약 및 약정 〉

❖ 한전 위수탁 계약서

- 1994년 최초 체결. 2010년 변경계약 시행
- 3년 단위 자동 연장 (특별 사유 발생 시 상호 협의 결정)

❖ 현행 한전 위수탁 세부운영 약정서 (2022.1.)

제3조(수신료 징수 및 분리청구)

- ① 한전은 수신료를 매월 전기요금과 병기청구하여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4조(약정기간)

- ① 세부운영약정기간은 2022년1월1일부터 2024년12월31일까지 3년간으로 한다.
- ② 약정기간은 특별한 사유나 이의가 없는 한 자동연장 하되, 약정기간 중 수신료 징수 위·수탁 계약 내용변경 또는 세부운영약정 내용변동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약정내용에 대하여 상호협의 결정한다.

□ 한전 위탁계약의 효율성

- 한전 위탁징수는 적은 비용으로 큰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현재 한전 위탁수수료는 한전 징수액의 6.15%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2년 한전에 지급한 수수료는 465억 원(VAT 포함)입니다. 현재의 위탁수수료는 2012년부터 2024년까지 12년간 6.15%로 동결되어 있습니다.

- 한전 수수료는 수신료를 고지해서 징수하는 비용뿐 아니라 전국 약 200개소 한전지사에서 전기업무와 수신료업무를 병행하는 직원의 인건비, TV수상기 소지자를 찾아내는 검침원 용역비, 수신료 관련 민원을 처리하는 한전 고객센터 용역비, 그리고 한전에 위탁하지 않았더라면 KBS가 부담했을 전산처리비, 소모품비용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 한전 위탁계약은 가장 효율적인 징수 방법

- 한전 위탁징수보다 효율적인 대안은 없습니다. 수신료 징수방식은 법으로 정해진 수신료 징수제도의 목적을 공평하게, 효율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수신료 징수대행기관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구비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 ❖ 협상의 효율성과 일원화된 업무체계 구축이 가능한 전국 단위 단일조직 보유
- ❖ 수신료 부과 대상인 TV수상기 소지자를 빠짐없이 관리할 능력 수반
- ❖ 업무가 단절되지 않는 안정성 유지
- ❖ 징수대행에 과도한 비용 불요

- 한국전력공사는 전국을 아우르는 단일 조직이고, 필수공익사업으로서 업무 연속성이 보장될뿐 아니라, TV수상기 소지자와 한전의 전력 이용자가 동일하므로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함께 청구하여 징수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수신료 징수대행 기관으로서 완벽한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5 공영방송 재정 붕괴 및 공적 기능 대폭 축소 우려

- 분리징수가 이루어질 경우, 순 수신료 수입(비용공제 후) 규모는 현재의 6,000억원 대에서 1,000억원 대로 추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순한 징수 방식 변경이 아니라 사실상 공영방송 재정이 붕괴되는 사안입니다.

〈 수신료 수입 감소 수준 (추정) 〉

구분	2022년 실적	분리징수 시	비고 (추정 근거)
등록률	97%	79.8%	· 1993년 등록률 적용
수납률	100%	52.6%	· 1993년 수납률 적용
수신료 수입	6,934억 원	3,001억 원	· 현 수입에 등록률, 수납률 적용
징수 비용률	9.52%	35.5%	· 1993년 징수비용률 적용
징수 비용	660억 원	1,065억 원	· 예상수입 x 예상징수비용률
순 수신료 (비용 공제 후)	6,274억 원	1,936억 원	· 수신료 수입 - 징수 비용

※ 1993년 등록·수납률에 기초한 추정치임. 실제 분리징수에 따른 등록·수납률은 더 낮아질 수 있음.

- 이렇게 될 경우 공영방송의 기능에 절대적인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특히 재난방송, 국제방송, 한민족방송, 대북방송, 장애인·소외계층을 위한 채널과 프로그램, 전국의 지역 네트워크 유지, 교향·국악관현악단 운영 등 국가기간방송 기능 및 시청자를 위한 공적 서비스의 많은 부분에 대한 축소 또는 폐지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 부록 'KBS의 공적채무 이행 노력' 참조

- 아울러 통합징수를 계기로 시행했던 1TV 광고 폐지, 취약층 수신료 면제 확대 등 공익적 제도를 유지하는 일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6 수신료 징수방법 변경 시 시스템 정비 기간 필요

□ 개정령안이 원안대로 확정될 경우 수신료 징수의 공백 발생

- 개정령안 부칙에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규정되어 있어 원안대로 확정될 경우 시행령 개정과 동시에 수신료 분리징수 조치를 취해야만 합니다.
- 그러나, 한국전력공사가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분리하여 청구하기 위해서는 전산시스템 변경 등의 실무적 준비에만 최소 6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시행령 개정 즉시 위법상태에 빠지거나 수신료 징수를 못하는 공백상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큼니다.
- 따라서, 설령 징수방법이 변경되더라도 전반적인 시스템 재구축과 정비 및 안정화를 위한 시일 확보가 필수적이며, 시행일은 현행 한전과의 위탁계약이 종료되는 2024년 12월 31일 이후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해 필요한 조치

- 수신료 청구를 위한 전산 시스템 개선
 - 수신료 납부가구(영업장)수 : 약 2,146만 가구
 - 현재 시스템은 전기고객번호에 수상기가 등록되어 전기요금 청구 시 수신료가 합산 청구되는 방식으로, 분리 청구를 위해서는 시스템 전반 및 고지서 출력방식 변경 등의 작업
- 수신료 청구 및 납부 방식 재설정

청구방식	인편, 우편, 이메일, 모바일 등
납부방법	자동이체, 계좌이체, 은행납부, 신용카드, 인터넷지로, 편의점 등

- 1994년 통합징수 도입 이전에는 저조한 징수율과 과도한 징수비용, 수신료 체납에 따른 강제집행 등 사회적 민원과 부작용이 많았습니다.

〈 수신료 제도 개선 배경 〉

- ❖ ‘선의의 납부자’만 수신료를 납부하는 형평성 문제
 - 징수율 53%에 불과, 미납 누적액 4,100억 원
- ❖ 수신료 체납에 따른 강제집행으로 인한 민원 증가
- ❖ 과도한 징수비용으로 인한 비효율 (징수비용이 징수액의 36% 차지)
- ❖ KBS 재정의 광고 편중 심화

-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행정쇄신과제’로 정부가 주도해 다양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한전 위탁 방식으로 수신료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 한전 위탁 전환 주요 경과 〉

일시	경과
1993년	■ 문민정부 출범 후 행정쇄신위 혁신과제의 일환으로 제안
1994.1.26.	■ 공보처 업무보고에서 정식 제기
1994.5.31.	■ 공보처에서 국회에 두차례 수신료 제도개선 방향 보고 (5.31 / 7.13.)
1994. 5월~6월	■ 공청회, 세미나 등을 통해 각계 여론수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바로세우기 시청자 연대회의 주관 공청회 2회 (5.31 / 6.16) - 방송학회 주관 세미나 (6.9.)
1994. 4월~7월	■ 범정부 차원에서 수신료 개선방안 협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무총리실, 내무부, 동력자원부, 공보처, KBS, 한전 등

- 수신료 제도개선을 통해 KBS는 1TV 광고방송을 폐지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수신료 면제 확대 등 공영성을 크게 강화하는 계기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 수신료 제도 개선 주요 내용 〉

[1994.10.1. 시행]

- ❖ TV수신료를 전기요금에 병과 징수 (수신료는 월 2,500원으로 동결)
- ❖ 1TV 광고방송 완전 폐지 (광고수입 연 596억 원)
 - 향후 2TV와 2R만 광고방송
- ❖ 저소득층, 난시청 지역 등의 수신료 면제 획기적으로 확대

- 수신료 분리징수를 시행할 경우 초래될 공영방송 재원 부족에 대한 대안 마련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이번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수신료 재원을 붕괴시켜 사실상 공영방송사로서의 KBS 기능을 중단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안입니다.
- 이미 효율성이 입증된 징수방식을 바꾸어야 할 필요성과 시급성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시행령이 개정될 경우, 그 자체로 '규제 신설'1)2)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회에서 제정된 방송법이 무력화됨은 물론 국민을 위한 공영방송 서비스를 마비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 또한 국정감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한전 위탁수수료의 절감을 요구해 온 국회의 입장3)과도 상충하게 될 것입니다.

1)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는 내용의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 법제처에 법령안심사를 요청하기 전에 규제영향분석서, 자체 심사 의견 등을 첨부하여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심사를 받아야 함.

2)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규제 법정주의) ② 규제는 법률에 직접 규정하되, 규제의 세부적인 내용은 법률 또는 상위법령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바에 따라 대통령령 등으로 정할 수 있다.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제영향분석을 하고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3) 국회는 국정감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한전 위탁수수료의 절감을 요구해왔으며, KBS는 이를 반영해 한전과의 위수탁수수료율을 2012년 이후 12년간 6.15%로 동결하고 있음.

- 그렇기 때문에 수신료 분리고지는 단순히 징수방법의 변경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선진 민주국가 대부분이 채택하고 있는 공영방송 제도를 대한민국에서 유지할 수 있을지 여부와 직결되는 중대하고 민감한 사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 공영방송 제도가 바람직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시대에 걸맞은 공영방송의 책임과 역할, 지원 방안에 관한 법적·제도적 논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속전속결’ 방식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핀란드의 경우 수신료 전담 기구를 만들어 사회적 논의를 거친 뒤 제도를 바꾸는 데 4년(2007~2011) 걸렸고, 독일은 수신료 징수기관을 바꾸는 데에만 10년 이상(2000~2010) 소요되었습니다.
- 공사는 단순히 하나의 방송사가 아니라 법에 규정된 다양한 공적 책무를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이 같은 ‘공공 인프라’로서 공사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더욱 숙성된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통해 공영방송의 개선·발전 방향을 모색해야 합니다.

※ **한전 위탁수수료 절감에 대한 국회 지적**

- **2017년 국정감사 시정·처리 요구사항**
 -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수신료 위탁수수료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 부대의견**
 - KBS는 한국전력공사에 위탁하는 수신료 징수업무의 수수료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2019년 계약 갱신 시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 부대의견**
 - KBS는 한국전력공사와 협의하여 수수료율을 낮추거나 일정금액을 책정(정액제)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등 수신료 인상에 대비하여 위탁수수료 절감방안 검토

Ⅲ. 참고 자료

1 KBS의 공적 책무 이행 노력

□ 공영·공익채널 운영 및 장애인·소외계층 위한 프로그램 제작

- 1TV, 2TV 및 4개의 종합 라디오 채널 운영
 - 1TV, 1라디오, 1FM 상업광고 무송출
- 공익·국책 방송 수행
 - 장애인의 권익 향상과 소외계층을 위한 국내 유일의 지상파 복지·정보 채널(KBS 3라디오) 운영
 - KBS한민족방송을 통해 북한 주민과 북방동포를 포함한 750만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민족의 민족적 자긍심을 고취하는 콘텐츠 제공
 - 국제방송(KBS월드 TV·라디오, KBS 코리아)을 통해 전 세계에 한국을 전파하는 한류의 중심 채널로서 자리매김
 - EBS 교육방송에 대한 수신료 지원, 송출 대행, 광고판매 지원
- 장애인을 위한 방송 서비스 확대·강화
 - 화면해설방송 확대로 시각장애인의 방송 접근성 제고
 - 프로그램 사전제작 확대로 다양한 화면해설방송서비스를 적시에 제공
 - 모든 TV 뉴스에 청각 장애인을 위한 수어방송 실시
 - 청각 장애인 VOD 자막 제작 및 편의성 확대
 - : 방영작, 인기 종영작 VOD 자막 제작 (연간 3,000시간 이상)

- 교육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와 함께 교육 프로젝트 <대한민국 1교시 똑똑똑(talk)> 특집 제작
- 2023 KBS배 어울림픽 실시 (23.4.22. ~ 4.29.)
 -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한 팀이 되어 휠체어 농구, 육상, 양궁 등 경기

□ 재난방송 주관방송사로서의 역할 충실히 수행

- 재난방송 인프라 구축 및 강화
 - CCTV 1만 4천 개, KBS 재난안전지도(GIS), 지진 AI시스템 등 구축
 - 14개 기관 재난정보 이미지·동영상 콘텐츠 개발 및 공유체계 정립
 - CCTV, GIS, 터치스크린 등 재난방송 리소스를 지역국으로 확대
 - 재난전문채널 및 온라인 재난정보서비스(IBB) 운영
- 재난방송의 정확성·신속성·신뢰성 확보
 - 전문위원(20명)을 위촉, 재난발생 시 전문가의 신속한 분석 전달
 - 재난 관련 주요 기관(산림청·홍수통제소·기상청)과 핫라인 구축
 - 제보 시스템 및 재난통신원 152명을 통해 시민 참여형 재난방송 구현
 - 각 지역총국이 자체 제작특보시스템 가동해 신속히 재난뉴스 전달
 - 재난방송 2단계 이상시 TV, 라디오 외 유튜브 채널에 동시 중계
- 국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를 위한 재난방송 진행
 - <코로나19 통합뉴스룸> 2년 7개월 동안 유지
 - 태풍 '힌남노' 당시 33시간 10분 연속 재난 생방송 실시

○ 피해 예방 및 안전 확보에도 주력

- 지난해 기준 TV와 라디오로 재난사건예방스팟을 1만3천 회 이상 방송
(TV 8,050회(8513분), 라디오5,330회(5931분))
- 재난안전 유튜브 채널 '세이프 K'와 인터넷·모바일 'KBS 재난포털'을
통해 재난 시 행동요령 상시 제공
- 재난 사전예방프로그램인 <KBS재난방송센터> 프로그램 정규 편성

□ 국가기간방송의 위상에 부합하는 지역성 구현

○ 전국에 18개 지역국을 두고 지역민을 위한 방송 활성화

○ 공사 지역국의 자체 제작 역량 강화

- 2022년 지역국 제작비 전년 대비 11% 증가 (약 419억 원 → 약 465억 원)
- 2022년 지역 정규프로그램과 특집프로그램 편성시간을 각각
2021년 대비 약 5,000분, 5,500분 이상 확대
- 2020년 이후 각 지역별로 <뉴스7>을 40분간 자체 편성
- 지역 공영방송만의 고품격 콘텐츠를 제작함으로써 국내·외 주요 상 연
속 수상

: 대전·청주총국 제작 <대청호>, 대구총국 제작 <GPS와 리어카>, 광주
총국 제작 <3공수, 42년 만의 증언록>, 제주총국 <다랑쉬 비망록> 등

○ 지역 미디어와 지속적 협업 통해 지역 문화 발달에 기여

- KBS 지상파 플랫폼을 지역 미디어들에 제공

: 전주총국 <풀뿌리K>, 부산(풀뿌리 해양K), 대전(과학기사를 부탁해) 등

- 시·군에서 활동하는 지역 언론과 협력해 지역 밀착형 뉴스 제작
- 재난 발생 시 지역 미디어와 협업해 뉴스 콘텐츠 확대

□ 상업방송과 차별화되는 고품질의 다양한 콘텐츠 제작

- KBS만의 대하드라마 제작
 - <용의 눈물>, <태조 왕건>, <불멸의 이순신>, <태종 이방원> 등
 - <고려 거란 전쟁> 방송 예정
- 세계적 수준의 고품질 다큐멘터리 제작
 - <히든어스>, <키스 더 유니버스>, <사유의 탄생>, <모던코리아> 등
- 기후 위기·재난 안전 기획 콘텐츠 지속 제작
 - 기후 위기·탄소중립 <뉴스 9> 연중 기획보도, <KBS재난방송센터>, <불편해도 괜찮아>, <시사기획 창>, <기후상담소> 등
- 국민 감동 장수 프로그램 유지
 - <1박 2일>, <인간극장>, <아침마당>, <전국노래자랑> 등

□ 품격 높은 시청자 서비스 제공

- 적극적인 대 시청자 서비스
 - 시청자 평가 프로그램 <TV 비평 시청자 데스크>, <열린 채널> 등
 - 시청자 청원 제도 운영
 - 기존 <시청자위원회> 외에 <1020 시청자위원회>를 설치, 17~25세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의견을 청취하고 미디어 교육 실시

- 시청자들을 위한 고품격 문화예술 단체 운영
 - KBS 관현악단, 국악관현악단 운영 / (재)KBS교향악단 지원
 - 시청자를 위한 고품격 문화콘텐츠 제공 및 보급 통한 사회 공헌
 - 정기 음악회, 찾아가는 음악회 등 무료 공연 상시 개최
- 콘텐츠 아카이브의 공적 활용 확대
 - 국내 지상파 최초로 무료 공공 콘텐츠 서비스인 'KBS 바다' 공개
 - : 전 국민이 KBS가 보유한 콘텐츠에 자유롭게 접근해 무료로 활용 가능.
 - 공영방송으로서 KBS 콘텐츠의 저작권을 공익적 목적으로 환원하고 교육·연구·창작 분야 활성화에 기여
 - 대한민국 근현대사 영상을 발굴, 방송하고 영상아카이브를 구축해 공개
 -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관련 기록물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

□ 방송문화 및 방송기술 선도

- 공영성 강화를 위한 연구와 평가체계 구축
 - <KBS방송제작 가이드라인> 발간 및 저널리즘 교육 강화
 - <KBS국민패널>을 운영하여 시사 이슈, 연구 관련 설문조사 등 수행
 - <프로그램 품질평가 : PSI(Public Service Index)> 반기별 실시
- 방송문화 연구 개발 확대
 - 공영미디어연구소를 중심으로 미디어산업 동향 및 데이터 수집·분석, 해외언론 분석 및 <해외방송정보> 간행, <방송문화연구> 발간, 학회 연구 지원

○ 지역 미디어 및 시청자 지원

- 지역 미디어교육 협력체계 운영
- 시청자에게 비상업적 목적으로 아카이브 개방

○ 방송기술 연구 개발

- 시청데이터 분석 시스템, 시청자 방송 참여 시스템 개발 등 차세대 미디어 기술 연구 개발 및 고도화
- AI 기반 제작 및 서비스 기술 개발, IR/XR 기반 제작 기술 연구
- 초실감 대용량 미디어 전달을 위한 차세대 방송네트워크 연구

□ 시청 환경 개선 및 UHD 방송 활성화

○ 지속적인 난시청 해소 및 수신환경 개선 사업 실시

- 절대 난시청 해소 : 위성을 통한 97,899가구 벽오지 난시청 해소
- 국지적 난시청 해소 : 동일채널 소출력중계기 설치 / 156,050가구 해소
- 무료 수신 및 매체 선택권 보장 : 공동주택 TV공시청시설 설치 / 2,587,181가구 설치
- 방송 수신환경 개선 : 단독·다가구주택 안테나 설치 / 82,449가구 설치

○ UHD 방송망 전국 확대 진행

- 서울, 수도권,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전주, 청주, 제주, 울산 UHD TV 방송국 개국(춘천, 창원 예정)
- ATSC 3.0 기반 송신인프라 전국 확대
- UHD 방송 제작 및 송출 인프라 기반 확대

□ 한국어 연구 및 진흥 사업 선도

- 표준 한국어 보급 사업 및 언어 순화 프로그램 제작·방송
: <안녕 우리말>, <우리말 겨루기>, <바른 말 고운 말> 등 제작
- 1983년 한국어연구회를 조직하여 40년째 운영 중
: 올바른 우리말을 알리기 위해 매달 한국어포스터를 전국 1만 2천 개 학교, 4만 2천 곳 아파트 및 공공장소 등에 배포
- <찾아가는 바른 우리말 선생님> 사업 시행
: 학생 50만 명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 실시, 한국어 연구 발간
- <한국어능력시험> 주관

□ 전기요금 통합징수 시행 국가 현황

- 유럽방송연맹(EBU)에 가입한 56개국 가운데 23개(41%) 국가가 수신료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중 12개(52%) 국가에서 전력회사를 통한 징수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 유럽방송연맹(EBU) 가입국의 수신료 운영방식 〉

구분	국가 수	수신료 유지국 내 비중	국가
전력회사 위탁징수	12	52.2%	이탈리아, 포르투갈, 그리스, 튀르키예, 세르비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알바니아, 요르단, 모로코, 튀니지, 이집트, 알제리
우체국	3	13.0%	아일랜드, 폴란드, 체코
자체징수	3	13.0%	크로아티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자체 별도회사	2	8.7%	오스트리아, 독일
외부대행사	2	8.7%	영국, 스위스
정부	1	4.4%	이스라엘

- 수신료 직접 징수방식을 운영하는 일본 NHK의 경우 수신료 인력이 4,800명에 이르는 실정입니다. 이 가운데 수신료 징수원만 3,900명에 달합니다. 반면 KBS는 한전 위탁징수를 운영하는 바, 약 160명의 직원만 수신료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 공영방송의 역할을 강화하는 세계적 흐름

- 유튜브, 넷플릭스 등 글로벌 미디어가 시장지배력을 확대하는 상황에서 세계 각국 정부는 공영방송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영국 보수당 정부에서는 공영방송사가 글로벌 스트리밍 대기업과 경쟁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미디어 법안(Draft Media Bill)을 올해 3월 발표했습니다.

〈 영국 미디어 법안(Draft Media Bill) 주요 내용 〉

- ❖ TV 채널에 국한되어 있던 공영방송의 소관 업무를 디지털 영역(on-demand programme service)으로 확대
- ❖ 셋톱박스 기반 미디어 플랫폼에서 공영방송의 서비스와 콘텐츠 우선 노출
- ❖ 非영국 디지털 서비스도 공영방송 디지털 서비스와 같은 방식으로 규제

□ 영국과 프랑스의 수신료 폐지 보도는 사실과 달라

- 영국 BBC 칙허장은 2027년까지 유효합니다. 이 때까지 수신료는 2년간(2022~2023) 동결 후 4년간(2024~2027) 물가상승률에 맞춰 인상될 예정입니다.
- 2028년 이후 수신료에 대해 영국 문화부 장관이 수신료 납부 의무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를 진행할 것임을 언급했지만, 영국 정부의 방침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 <BBC 재원 조달에 관한 상원위원회 보고서(Licence to change : BBC future funding)>(2022.7)는 “(광고나 구독료 모델 같은) 상업적인 재원 조달 방법은 실행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BBC가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공적 자금이 지속적으로 지원되어야 한다.(As these fully commercial options are not viable, continued public funding must be

retained to ensure the BBC can deliver on its purpose.)”라고 밝혔습니다.

- 한편 프랑스는 수신료 대신 세금으로 공영방송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프랑스의 수신료는 주민세와 함께 징수하는데, 프랑스 정부가 주민세를 폐지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수신료를 다른 방식으로 부과하게 된 것입니다.
- 프랑스 정부는 국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줄이고 구매력을 촉진하기 위해 국민들에게 수신료를 징수하는 대신, 전체 수신료 액수와 동일한 규모를 ‘부가가치세를 통해 조성한 정부 예산’으로 조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규모는 2024년까지 37억 유로, 우리 돈으로 약 5조 2천억 원입니다. 프랑스 정부는 2025년 이후 공영방송 재정을 운영할 자금 조달 방안을 여러 방향에서 모색하고 있습니다. 끝.